##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6, 1, 1,] [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2165호, 2025, 3, 20, 일부개정]



경상남도 사천시(보건위생과). 055-831-3624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 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지원대상)

-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사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55세 이상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<개정 2025.3.20.>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-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.
- 1. 「국적법」에 따른 외국인
- 2.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

제3조(접종 종류 및 횟수)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백신이며, 지원 횟수는 지원 대상자별 1회로 한정한다.<개 정 2025.3.20.>

[제목개정 2025.3.20.]

제4조(비용지원) 사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#### 제5조(지원절차)

-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.
- 1. 당사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
-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 상위계층 확인서
- ② 제1항에 따라 접종기관을 방문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하고, 작성 된 예방접종 예진표에 따라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.
-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

# 제6조(환수조치)

-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. 다만. 행방불 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
- 2. 이 조례에 따라 두 번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
-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・관 리하여야 한다.

### 제7조(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)

-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.
-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「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6조부터 제8조 까지를 따른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칙** <조례 제1683호 2020.6.11.>

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**부칙** <조례 제2165호, 2025. 3. 20.>

**제1조**(시행일)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·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
